



엘엔에스자산운용 주식회사

임시주주총회 결과 공시

I. 근거법령

-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

II. 공시사항

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일시 | 2021년 06월 09일 (08:00) |
| 2. 장소 | 엘엔에스자산운용(주) 본점 회의실 |
| 3. 주주의 참석률 | 100% 참석 |
| 4. 안건별 찬반 주식수 비율 | [제1호 의안] 정관 일부 변경의 건 : 찬성 100% |
| 5. 발행주식 총수 | 400,000주 |
| 6. 의결권 행사 주식수 | 400,000주 (100%) |
| 7. 변경내용 | 첨부 참조 |

엘엔에스자산운용 주식회사

대표이사 서경민 (직인생략)

(별지)

정관 일부 변경(안)

| 변경 전 | 변경 후 | 비 고 |
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 4조(공고방법) 본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| 제 4조(공고방법)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(http://www.lnsasset.com)에 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. |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로 변경 |
| 제8조(주식 및 주권의 종류) ①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. ② 본 회사의 주권은 일주권, 오주권, 일십주권, 오십주권, 일백주권, 일천주권, 일만주권의 7종으로 한다. ③ 주주총회의 결의로 전 각항과 다른 주식, 다른 주권을 발행할 수 있다. | 제 8조(주식 및 주권의 종류)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<u>기명식 종류주식</u> 으로 한다. ② 본 회사의 주권은 일주권, 오주권, 일십주권, 오십주권, 일백주권, <u>오백주권</u> , 일천주권,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. ③ 회사가 <u>발행하는 종류주식은</u> 이익배당 또는 잔여 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,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, 상환주식,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할 수 있다 | 종류주식 추가 권종 추가 종류주식 유형 명시 |
| | 제 8조의2(제1종 우선주식) ① 회사는 종류주식으로 의결권 없는 이익배당 우선주식(이하 이조에서는 '제1종 우선주식'이라 한다)을 발행 할 수 있다. ② 제1종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내로 한다. 단, 제1종 우선주식을 포함하여 의결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 ③ 제1종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우선 배당한다. 제1종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0% 이상 12% 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. ④ 제1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제1종 우선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,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제1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(참가적). ⑤ 제1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, 그 미배당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연되지 아니한다(비누적적). | 신설 |

| 변경 전 | 변경 후 | 비 고 |
|---|---|---|
| <p>제 9조(신주인수권)</p> <p>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</p> <p>1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.</p> <p>2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.</p> <p>3.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4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(DR)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5.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6.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(또는 각종 연기금 포함) 일반법인(또는 특수법인),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7.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8. 주권을 신규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</p> <p>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행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</p> | <p>제 9조(신주인수권)</p> <p>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<u>이사회의 결의로</u>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</p> <p>1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.</p> <p>2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.</p> <p>3.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4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<u>주식예탁증서(DR)</u>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5.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6.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(또는 각종 연기금 포함) 일반법인(또는 특수법인),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7.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8. 주권을 신규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</p> <p>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행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</p> | <p>제3자배정 신주발행을 이사회 결의사항 으로 변경</p> <p>증복 문구 삭제</p> |
| | <p>부칙 <2021. 05. 31.>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시행한다.</p> | 부칙 추가 |

끝.